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 18682 호, 2022. 1. 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60

제 66 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등(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 3 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교환받는 자동차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등에 부과되어야 할 세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취득으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취득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5. 12. 29., 2017. 12. 26., 2021. 12. 28.>

② 「자동차관리법」 제 13 조제 7 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 6 조제 1 항제 7 호에 따라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기 위한 등록면허세는 면제한다. <개정 2020. 1. 15.>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5 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 2 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8. 12. 24., 2021. 12. 28.>

1.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90만원을 공제한다.
3.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 6 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 2 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신설 2011. 12. 31.,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18. 12. 31., 2020. 1. 15., 2021. 12. 28.>

1. 삭제 <2020. 1. 15.>
2. 삭제 <2020. 1. 15.>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안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포함) 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2조의2.

감면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급 ~ 3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시각장애인으로서는 다음 각 호종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구, 장애등급 4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 7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중 신체 장애 등록 1급 ~ 14급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등급 판정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 차종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

※ 특수자동차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구비 서류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경증시각장애의 경우에는 장애정도결정서 추가제출)

국가유공자증(상이등급 표시)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등

명의 등록시 유의사항

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단독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자와 공동 명의 등록 시 감면

1.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2.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형제자매

※ 직계혈족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함. (관련 근거 : 민법 제768조)

감면자동차의 등록 후 유의 사항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차량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분리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공동등록한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공동등록한 사람이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 공동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

※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 문의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구청 세무부서로 하면된다

기존에 감면받은 차량이 아닌 새로운 차량 감면의 경우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분한 뒤 새로운 차량을 등록하여야 감면이 됩니다.

- 말소등록

- 기존 감면 차량의 명의자(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자 전원)외의 제3자에게 이전등록

※ 관련법령 참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중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자녀 가구 차량 감면안내

18세 미만(차량 등록일 기준)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는 차량은 다음과 같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감면대상

(차량등록일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아래의 차량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

※ 감면신청 대상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감면내용

※ 공동명의 시 배우자만 공동등록 가능(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 하는 경우 감면 안됨)

자동차종류	감면대상	감면세액
승용자동차	가. 7~10인 이하 승용차량	취득세 전액 면제 (최소납부세액 적용)
	나. 가목 외의 승용차량	취득세 : 140만원 한도 면제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량	취득세 전액 면제 (최소납부세액 적용)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차량	취득세 전액 면제 (최소납부세액 적용)

최소납부세액 적용 안내

-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취득세액의 15% 납부
- 자동차 '취득일' 과 '등록일'이 다른 경우, '자동차 등록일'을 기준으로 최소납부세액 적용여부 결정

예시 1) 다자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3,500만원 승용자동차(7인승) 신규등록 시 계산되는 취득세액 : 35,000,000 원*7%*15%=367,500 원

예시 2) 다자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2,800만원 승용자동차(7인승) 이전등록 시 계산되는 취득세액 : 0 원(취득세 1,960,000 원 감면)

예시 3) 다자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3,500만원 승용자동차(5인승) 신규등록 시 계산되는 취득세액 : 35,000,000 원*7%-1,400,000 원=1,050,000 원

감면자동차의 등록 후 유의 사항

-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자동차를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의 경우는 제외)

-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추정에서 제외되나 향후, 다른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대체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 감면받은 차량이 아닌 새로운 차량을 감면 받고 싶은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분한 뒤 새로운 차량을 등록하여야 감면이 됩니다.

- 말소등록

- 기존 감면 차량의 명의자 외의 제3자에게 이전등록

※ 관련법령 참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수소·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감면대상 : 수소·전기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함.

감면세액 : 140만원까지 감면

감면기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

감면대상 : 하이브리드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함.

감면세액

연도	감면세액
2019년	140만원까지 감면
2020년	90만원까지 감면
2021, 2022년	40만원까지 감면

경차 취득세 감면

감면대상 : 경형자동차

감면세액

차종	감면세액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5만원까지 감면
승합 및 화물자동차	전액 감면

감면기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천재지변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감면 대상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파손되어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차량

구비 서류

천재지변 피해사실 입증서류(①, ② 중 택일)

① 피해사실확인서(재해지역 지자체 발행) + 폐차말소증명서※ 폐차말소증명서 대신 폐차인수증명서도 가능

②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대한손해보험협회장 발행)

감면 유의사항

멸실, 파손차량의 신제품구입가액*만큼 감면※ 신제품구입가액 : 피해 입은 차량의 최초 등록 시 신고가액

구입차량가액이 종전자동차가액을 초과 시 초과분 취득세 부과

교환자동차 감면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감면 대상

제작결함으로 인한 반품 후 교환받는 차량

구비 서류

말소사실증명서(말소사유 : 제작결함 등으로 인한 반품)

제작결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반품사실확인서(제작사 발행)

감면 유의사항

동일제작사의 동일차종으로 교환 시에만 감면 가능※ 승용↔승용, 승합↔승합

교환차량세액이 종전자동차세액을 초과 시 초과분 취득세 부과